



장애인의 스포츠권 보장의 철학적 함의*

이 학 준** · 강 병 일***

The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the Right to Sports for the Disabled

Lee, Hakjun** · Kang, Byungil***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guaranteeing sports rights for the disabled. **[Method]** To this e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literature related to sports rights. **[Result]** The results are as follows. Sports rights of the disabled are guaranteed by basic sports rights, as the disabled cannot be an exception. All human beings have the right to enjoy sports. For the disabled, sports rights have three philosophical implications: first, their physical activity needs and sports enjoyment rights; second, the independent participation of going from spectators to participants; third, the improvement of sports human rights. Good lives for the disabled should be protected through the guarantee of the sports rights of the disabled. Life is not divided into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but all humans have the right to live happily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disabled or not. It has a philosophical meaning that has been guaranteed by law. **[Conclusion]** The guarantee of sports rights for the disabled can be developed through sports facilities, sports programs, and training sports leaders for the disabled.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epare practical measures and policies to guarantee the sports rights of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Keywords: philosophical implication, sports right, disable, sports facilities, sports programs

* 본 논문은 2021년 가야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 제 1저자, 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the Korea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 교신저자, 가야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교수(kbihj@hanmail.net)
Professor, Dept. of Special Physical Education, Kaya University.

I. 서론

1.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 스포츠권이 필요한 이유는 장애인 스포츠 활동이 장애인의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신체활동이 부족하면 생활습관병(성인병)의 발병률이 증가한다. 생활습관병을 치유하고 개선하는 데 스포츠 활동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 예로 지체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는 건강 만족, 여가만족,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권일 외, 2018; 최수정, 이현수, 2022).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는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고립감을 줄일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김매이, 2022).

이러한 장애인 스포츠가 장애인에 미치는 장점에서 중요한 쟁점은 장애인의 생존권과 건강권이다(최승호, 최대원, 배종진, 2012). 장애인에게 중요한 것은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일이다. 아니 장애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꿈꾸는 소망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그 소망을 실현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그 이유는 장애인에게 꿈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되는 걸림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 장애는 생존권, 이동권, 자유권 등이다. 이러한 장애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스포츠권은 현실에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우선, 장애인의 생존권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고용이 문제가 된다. 장애인이 안정적이며 수입이 보장된 직장을 얻을 수 있어야 안정적 삶이 가능하다. 고용은 장애인 당사자가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다. 경제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재화는 고용 안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는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 모든 인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현실은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취업하기가 어렵다.

특히나 신체활동을 주로 행하는 스포츠는 장애인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장애인 스포츠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스포츠 프로그램, 스포츠지도자, 스포츠 시설이다. 이 중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이 필요하다. 장애인 생활스포츠의 성공 여부는 스포츠시설에 접근하기 쉬어야 한다. 스포츠를 하려고 해도 스포츠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곳까지 이동하기가 장애인에게는 어렵다. 이를 위해서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기반 체육관이나 스포츠시설이 있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이동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동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현실은 어렵다는 점이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이동을 돕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든지 스포츠를 하기 위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행복한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나를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스포츠권에 대한 연구(고기복, 2017, 2019; 김상겸, 2011; 유재구, 김장우, 윤현정, 2020; 정성범, 백윤철, 2009; 정승재, 2012)와 장애인 스포츠권 연구(민솔희, 조재훈, 2020; 추근도, 박기용, 최경훈, 2003; 추근도, 박기용, 2006)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마침내 2022년 2월 스포츠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스포츠권 보장으로 장애인의 스포츠권 보장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스포츠권 보장의 정당화 근거, 실행 방법 그리고 그것의 철학적 함의를 탐구하는 것이다. 논의 절차는 첫째, 장애인의 스포츠권 보장의 정당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의 스포츠권 보장의 실행 방안을 찾는 것이다. 셋째, 장애인의 스포츠권 보장의 철학적 함의를 밝히는 것이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스포츠권 보장의 철학적 함의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 문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장애인 스포츠권 보장의 정당화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장애인 스포츠권 보장의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장애인 스포츠권 보장의 철학적 함의는 무엇인가이다.

II. 장애인 스포츠권 보장의 정당화 근거

장애인 스포츠권 보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최근 시행된 [스포츠기본법] 제4조와 제12조에서 찾을 수 있다.

1. 스포츠기본법 제4조 (국민의 권리)

그동안 장애인의 신체 활동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 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등)와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가 장애인 스포츠와 관련이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5조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 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등이다(<https://www.law.go.kr>).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애인 스포츠를 보장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는 다음과 같다. ① 체육활동을 주최,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 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https://www.law.go.kr>).

이러한 장애인 스포츠 관련 법이 발전하여 마침내 장애인 스포츠권 보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스포츠기본법]이 마련되었다. 이 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 할 권리(스포츠권)를 가진다.’ (<https://www.law.go.kr>) 라고 명시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 취약 계층의 사람들은 스포츠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으로 스포츠 참여를 하지 못했다. 그 주된 근거는 법으로 스포츠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충분하지 못한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2. 스포츠기본법 제12조 (장애인 스포츠에 관한 시책)

[스포츠기본법] 제12조 (장애인 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스포츠의 진흥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https://www.law.go.kr>). 이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면 이번 스포츠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 스포츠권 보장의 정당화 근거를 [스포츠기본법] 제4조와 제12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제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장애인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데 방

해를 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향유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은 법으로 장애인의 스포츠권이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면 이번 시행한 [스포츠기본법]은 그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에게 장애인 스포츠가 정상화하는데 근거를 마련하였다.

III. 장애인 스포츠권 보장의 실행 방안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를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배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실행된 [스포츠기본법]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스포츠권을 찾을 수 있다. 장애인의 스포츠권 보장의 실행 방안으로 장애인 맞춤형 스포츠시설과 프로그램,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의 자유 제공, 장애 유형별 스포츠 활동 지원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장애인 맞춤형 스포츠시설과 프로그램

2021년 기준 교육부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9만 8,147명으로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5만 4,272명(55.2%), 특수학교에 2만 7,022명 (27.5%),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에 1만 6,592명(16.9%)이 재학 중이다. 특수교육 대상의 절대다수가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만큼 ‘모두가 행복한 체육 시간’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전영지, 2022).

대통령은 2022년 10월 7일 울산에서 개최한 전국체육대회 개회사에서 장애인 맞춤형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이다. 스포츠 활동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받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체육시설은 비장애인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장애인은 스포츠시설을 건설하는 설계부터 배제되었다. 지금이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스포츠시설을 건설하는 설계부터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편적(UD) 스포츠시설, 보편적 학습설계 기반 프로그램, 장애인 스포츠지도사를 공급하여 제대로 된 장애인 스포츠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국가 공인 자격으로서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배치 비율과 활용도가 극히 낮은 실정이다. 이는 자격 시행 이후 자격 취득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스포츠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장애인체육지도사들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관련 법의 부재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 및 규모, 이용자에 따른 현황조사를 하여 장애인체육지도사들의 의무적 배치를 통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윤석민, 2018).

이처럼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양성뿐만 아니라 수요가 있어야 지속적인 공급망이 이루어진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치의 필요성과 의무가 있지만, 이를 잘 이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전문직으로서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자신의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지도자를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장애인의 스포츠권 보장을 실행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의 자유 제공

[스포츠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스포츠기본법은 인간이 신체활동의 욕구를 추구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역시 신체활동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스포츠 기본권이 2022년 2월부터 시행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나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배제해왔던 부분으로 제자리를 찾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장애인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으로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기에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현장 도움을 주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경제적 안정이 도모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 활동의 자유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스포츠를 할 여력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기회를 늘리는 일차적인 방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다. 이

를 통하여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고 자신의 신체활동 욕구를 충족하면서 함께 사는 일원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배제하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찾아볼 수 없어야 한다. 어려서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협력하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일상과 스포츠 활동에서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이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는 이유다.

3. 장애 유형별 스포츠 활동 지원

[스포츠기본법] 제12조(장애인 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스포츠의 진흥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장애 유형별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스포츠기본법] 제5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한 교실에 있는 일반 통합학급의 경우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4,878명으로 가장 많고, 지체 장애는 2,376명이다. 다음으로 청각장애 1,723명, 시각장애 460명 등이다(전영지, 2022). 장애 학생은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잊혀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장애 유형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장애 유형에 맞춘 스포츠 프로그램과 시설, 기구 그리고 지도자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 단적인 이유는 비장애인과 다르게 장애 학생은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고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통합체육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학교체육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형식적인 수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합체육 수업에 함께 하지만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역할이 구분 짓고 그에 따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점을 전환하여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스포츠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배구를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배구만이 아니라 좌식배구를 한다면 비장애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좌식배구는 모두 앉아서 하므로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통합체육 수업의 장애 요소를 제외하는 효과가 있으며 수업의 참여율이 높아 성공적인 통합체육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 스포츠권 보장은 스포츠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장애인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길 권리는 스포츠권이라고 한다. 과거 스포츠는 유한

계층의 산물이었다.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2022년 2월 시행된 스포츠권이 장애인 스포츠에 주는 철학적 함의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철학의 함의는 세 가지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은 존재론적, 인식론적, 가치론적 함의이다. 철학은 간략히 말하면 비판적 성찰이다.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철학은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철학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본 결과 포착되는 것이 철학적 내용이다.

IV. 장애인 스포츠권 보장의 철학적 함의

[스포츠기본법] 제3조(정의)에서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형태”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체육, 스포츠, 운동을 모두 신체활동으로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신체활동을 스포츠라고 한정하고 있다. 같은 법에서 장애인 스포츠는 “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생활 스포츠와 전문 스포츠를 포함한다)” 으로 정의하였다. 장애인 스포츠는 장애인 학교 스포츠, 장애인 전문 스포츠, 장애인 생활 스포츠로 구분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을 구체화하여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정책을 마련하면 소외되거나 제외될 수 있는 지엽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장애인 스포츠권 보장이 갖는 철학적 함의는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1. 존재론적 함의: 장애인의 스포츠권 향유

스포츠권은 장애인의 신체 활동적 욕구를 충족하고 스포츠를 향유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모든 인간은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는 행복 추구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행복 추구권의 일종으로 스포츠권을 역시 해석할 수 있다. 스포츠 활동의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다. 인간은 매슬로우가 주장하는 욕구 단계를 전제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신체활동의 욕구를 법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은 일반 체육에서 구분하여 정책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 학교스포츠, 장애인 전문스포츠, 장애인 생활스포츠

으로 구분해야 한다. 우선 장애인 학교스포츠는 통합체육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을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통합체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비장애인 학생은 심판이나 참관이라는 소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성공적인 통합체육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한다.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학교체육 수업을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통합체육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통합체육 수업은 체육 교사와 특수교육가 협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보편적 학습설계 기반 통합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통합체육 교사와 장애인 단체가 협력하여 성공적인 통합체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편적 학습설계는 다양한 참가, 다양한 신체와 표현, 다양한 표상을 제공하여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수준별 목표에 맞게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체육 교사가 보편적 학습설계(UDL)를 이해하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목표설정과 다양한 자료제공과 참여를 보장하고 신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현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국, 장애인의 스포츠권 보장의 존재론적 함의는 장애인이 스포츠권 향유함으로써 진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스포츠를 할 때 가장 자유로운 상태로서 진짜 인간이 된다고 한다. 그동안 장애인은 신체 활동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스포츠를 즐길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장애인의 스포츠권 보장은 결국 스포츠를 향유하며 그 속에서 진짜 자유로움과 진짜 인간이 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 인식론적 함의: 인식 주체로서 주체적 참여

비장애인 학생은 그동안 통합체육에서 주로 관전자였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비장애인은 통합체육의 참여자가 되고 장애 학생은 관전자가 되어 수업이 진행되었다. 스포츠권에 따라서 장애 학생도 비장애 학생과 같은 조건, 시설,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스포츠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장애인의 스포츠시설과 프로그램 그리고 지도자 양성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 스포츠시설을 지원하고 건축할 때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를 고려하여야 한다.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당시부터 고려한 설계가 만들어지고 스포츠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비장애인 학생이 스포츠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를 극복하고 신체활동을 할 수 있

게 된다. 시작부터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성공적인 장애인 스포츠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 장애 학생을 배제하고 비장애인, 비장애 학생만을 위한 시설을 건설해 왔다. 우리 사회는 함께 사는 사회라는 것은 깨달아서 인권 감수성 향상을 통하여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은 그동안 스포츠에서 인식 대상이었고 결코 인식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식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스포츠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인식 주체로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더는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스포츠에서 인식 주체로서의 장애인의 역할이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스포츠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스포츠를 하고 싶어도 마땅한 시설이나 기자재가 부족하면 실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3. 가치론적 함의: 장애인의 스포츠 인권 향상

장애인 스포츠권 보장의 가치론적 함의를 밝히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가치론에 대한 이해이다. 철학에서 가치론은 진선미성(眞善美聖)의 가치를 연구하는 영역이다. 진(眞)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참된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탐구한다. 선(善)은 선함, 착함을 연구하는 윤리 분야이고, 미(美)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고찰하는 것이다. 성(聖)은 종교적 가치를 연구하는 분야다. 따라서 장애인의 스포츠권 보장의 가치론적 함의는 진선미성의 가치에 대하여 시사하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학문 분야와 연결하면 윤리학, 미학, 사회철학, 종교철학과 관련된다.

그동안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권리를 충분하게 받지 못했다. 장애인은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신체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따라서 장애인의 인권 보장 차원에서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분리하여 학교체육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함께 스포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표적인 방법이 e스포츠 교육이다. e스포츠는 온라인 공간에서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체육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제는 장애 학생이 학교체육 수업에서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포츠기본법은 장애인의 스포츠 인권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장애인 학교체육, 통합체육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몸으로 배우면서 마음으로 공감하면 실천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학교에서 인권교육, 장애인 인권교육을 시행하여 인식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제도적 힘으로 행하는 인위적 교육보다는 일상에서 장애인 스포츠, 통합체육에서 함께 하면서 배워가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교육은 인위적인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보다 빠르게 체화한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인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존중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어린 나이부터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장애인 스포츠, 통합체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스포츠권 보장의 가치론적 함의는 장애인 스포츠윤리에서 만날 수 있다. 스포츠윤리는 장애인 스포츠의 발전에 저해 요인이 아니라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받침이 될 것이다. 스포츠윤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스포츠는 제대로 된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애인 스포츠가 확장할 수 있는 이유는 스포츠윤리가 준수될 때 가능한 것이다. 장애인의 스포츠권 보장은 윤리적 차원에서 스포츠 인권 보장과 스포츠윤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장애인의 스포츠권 보장의 정당화 근거와 실행 방안 그리고 철학적 함의를 탐구하였다. 장애인의 스포츠권은 2022년 2월 시행된 스포츠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스포츠기본법] 제4조에서 스포츠권은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 할 권리(스포츠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국민에게 스포츠권을 보장하도록 헌법에서 강제하고 있다. 장애인도 스포츠권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스포츠를 즐길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스포츠권 보장은 세 가지 철학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장애인 스포츠권 보장의 존재론적 함의는 신체 활동적 욕구 충족과 스포츠 향유권이다. 둘째, 장애인 스포츠권 보장의 인식론적 함의는 인식 주체로서 주체적 참여이다. 셋째, 장애인 스포츠권 보장의 가치론적 함의는 스포츠 인권 향상이다. 장애인의 스포츠권 보장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 삶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유무를 떠나 모든 인간은 스포츠를 향유 할 권리가 있다. 이것을 법으로 보장하게 되었다는 것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스포츠권 보장의 성공적 실행은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시설, 스포츠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양성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맞춤형 스포츠시설과 프로그램,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의 자유 제공, 장애 유

형별 스포츠 활동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Basic Sports Act. (Enacted on August 10, 2021. Law No. 18380). Retrieved November, 22, 2022. from <https://www.law.go.kr>
[스포츠기본법 (제정 2021.08.10. 법률 제18380호). <https://www.law.go.kr> 에서 2022.11.22. 인출]
- Choi, S. J., Lee, H. S. (2022). A Predictive Model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the Physical Disabilities in Sport for the Disabled.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30(3), 171-186.
[최수정, 이현수(2022). 장애인 스포츠참여 지체 장애인의 건강증진행위 예측모형 검증. **한국특수체육학회지**, 30(3), 171-186.]
- Choi, S. O., Choi, D. W., Bae, J. J. (2012). A Review of the Dominant Perspectives and Value Issues on Disability Sports. *Korean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20(4), 1-16.
[최승호, 최대원, 배종진 (2012). 장애인 스포츠의 주요 관점과 논제에 대한 고찰.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0(4), 1-16.]
- Choo, G. D., Park, K. Y. (2006). Consideration form Basic Right that the Disabled have to Basically take Advantage of the Rights for Sports of the Disabled.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5(1), 93-102.
[추근도, 박기용(2006).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 스포츠권에 대한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45(1), 93-102.]
- Choo, G. D., Park, K. Y., Choi, G. H. (2003). The Research of the Disabled' Sports Right and the Legal Necessity. *Korea sport research*, 14(6), 701-718.
[추근도, 박기용, 최경훈(2003). 장애인 스포츠권과 법적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4(6), 701-718.]
- Jeon, S. B., Bae, Y. C.(2009). The Right of Sport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Effect of Sports on International Relations. *Sport and Law*, 12(2), 181-211.
[정성범, 백윤철(2009). 헌법상 스포츠권과 스포츠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엔터테인먼트**, 12(2), 181-211.]
- Jeong, S. J. (2012). Constitutional Status of Sportright - Athlete's real condition and solution plan about school violence and the way Law-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go. *Law and Human Right Education Research*, 5(3), 69-86.
[정승재(2012). 스포츠권의 헌법상 지위. **법과 인권교육 연구**, 5(3), 69-86.]
- Jeon, Y. J. (2022) Asked the Paralympic heroes. "What did you do in P.E. class?" Sports

Issues and Diagnosis No. 97.

[전영지 (2022). 패럴림픽 영웅들에게 물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뭐하셨나요.” **스포츠현안과 진단**, 97호.]

Kim, G. I., Seo, E. C., Kim, M. H. (2018). A path model of physical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dividuals with physical disabilities: the mediation effects of health satisfaction, leisure satisfaction, and acceptance of disability. *Korean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26(4), 95-107.

[김권일, 서은철, 김미혜 (2018). 지체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와 생활만족의 인과모형: 건강만족, 여가만족, 장애수용의 다중매개효과.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6(4), 95-107.]

Kim, M. I. (2022). Meaning of disabled people's participation in sports and guaranteeing sports rights. *The 60th Korea Physical Educations Association Conference*. 46-61.

[김매이 (2022). 장애인의 스포츠참여 의미와 스포츠권 보장. 제60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 46-61.]

Kim, S. K. (2011). Right to Sports and the Korean Sports Law System. *Public land law review*. 54, 439-460.

[김상겸 (2011). 스포츠권과 한국 스포츠법의 체계. **토지공법연구**, 54, 439-460.]

Ko, K. B. (2017). A Study on Rights to Sports as Human Rights. *Sports and Law*. 20(4), 27-28.

[고기복 (2017). 인권으로서 스포츠권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 20(4), 27-48.]

Ko, K. B. (2019). A Comparative Law Study for the Guarantee of Sports Rights. *Sports and Law*, 23(4), 123-144.

[고기복 (2019). 스포츠권의 보장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스포츠와 법**, 23(4), 123-144.]

Min, S. H., Cho, J. H. (2020). Analyses of Implications on the Sport Innovation Recommendations and Application toward the Adapted Sport Sector.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9(1), 339-31.

[민솔희, 조재훈 (2020). 스포츠혁신권고안의 함의와 장애인 스포츠분야 적용. **한국체육학회지**, 59(1), 339-31.]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Partially Revised December 21, 2021. Law No. 18625). Retrieved November, 22, 2022. from <https://www.law.go.kr>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21.12.21. 법률 제18625호) <https://www.law.go.kr> 에서 2022.11.22. 인출]

Yoo, Z. G., Kim, J. W., Yoon, H. J. (2020). Normative System of the Sport Human and National Responsibilities. *Sport and Law*, 23(4), 75-95.

[유재구, 김장우, 윤현정 (2020). 스포츠권 법규범 체계와 국가의 책무. **스포츠와 법**, 23(4), 75-95.]

Yun, S. M.(2018). The policy proposal for the promotion of physical activ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 Legislation. *Sports Science*, 38(1), 77-85.

[윤석민 (2018). 장애인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한국과 미국의 장애인 스포츠 관련 법 비교. **스포츠사이언스**, 36(1), 77-85.]

<국문 초록>

장애인 스포츠권 보장의 철학적 함의

이 학 준 · 강 병 일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스포츠권 보장의 철학적 함의를 탐구하는 것이다. **[방법]** 이를 위하여 장애인의 스포츠권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철학적 함의를 찾아보았다. **[결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의 스포츠권은 모든 인간은 스포츠를 즐길 권리를 가진다고 스포츠기본권에서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 스포츠권 보장은 세 가지 철학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존재론적 함의는 신체 활동적 욕구 충족과 스포츠 향유권이다. 둘째, 인식론적 함의는 인식 주체로서 주체적 참여이다. 셋째, 가치론적 함의는 스포츠 인권 향상이다. 장애인의 스포츠권 보장을 통하여 장애인의 좋은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 삶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장애 유무와 관련 없이 모든 인간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특히 스포츠를 향유 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게 되었다는 것에 철학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장애인의 스포츠권 보장의 실행 방안은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시설, 스포츠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양성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다. **[결론]** 그러므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철학적 함의, 장애인, 스포츠권, 스포츠 시설, 스포츠 프로그램

논문 접수(Received): 2022. 11. 10. / 심사 시작(Examined): 2022. 11. 10. / 게재 확정(Accepted): 2022. 12. 08.